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 제출 안내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 자격 확인)에 따라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유의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**본청약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20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**
-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류는 “주민등록번호”,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 및 “주소변동이력” 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“전체포함” 또는 “상세”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공급자격 적격 여부 확인 중 아래 서류 외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1항 및 제52조제4항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비서류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 / 대리인 발급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원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·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 표시 •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※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•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※ 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 (본인)	• 용도 : 위임용 (본인 발급용에 한함 / 대리인 발급 불가)
	○		위임장	-	• 청약자(본인)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